- (6) 감시자는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, 모르타르의 누출, 이동, 경사, 침하, 접합부의 느슨해짐 등이 발생하는 경우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(7) 관리감독자는 거푸집 동바리의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경우 작업을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다음 충분히 보강 조치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.
- (8) 콘크리트를 타설은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여야 한다.
- (9)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가. 작업 전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 등 펌프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 시 보수할 것
- 나.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·선회로 인하여 떨어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떨어짐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
- 다.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 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
- 라.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,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 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

5.4 동바리 해체작업 준수사항

- (1) 거푸집 동바리 해체작업은 작업전 해체 시기 순서 등 해체작업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2) 거푸집 동바리의 해체 시기는 설계도서상의 거푸집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 가능 강도를 준수하여 해체하여야 한다.
- (3) 해체 시기·범위 및 절차 등의 해체작업 안전계획은 해체작업 근로자에게 교육 하여야 한다.
- (4) 해체 작업 구역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출입을